

2025 세법학 II .zip 추록

2025년 7월 2일 발행
정정운 · 손재호 공저 / 상경사 출간

- 이 추록은 『세법학 II .zip』 제7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이 추록은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I . 오류수정사항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144	下 8	100만원까지	70만원까지
158	下 12	제조장에는	제조장에
211	下 9	취득세	취득세 <u>비과세</u>

II . 개정법령으로 인한 수정사항

1.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개정내용>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탄력세율) ○ 탄력세율 : 3.5%(기본세율은 5%) — 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 100만원 ○ 적용기간 : 2025.1.3.~ <u>2025.6.30.</u>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 왼쪽과 같음 ○ 적용기간 : 2025.1.3.~ <u>2025.12.31.</u> (6개월 연장)

<적용시기>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p.148 上 11~12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 2025.1.3.부터 2025.12.31.까지 효력을 갖는다.

🕒 p.149 上 4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3.부터 2025.12.31.까지 반출하는 …

2.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등

<개정내용> 유류비 및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연장·조정하였다.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 2025.4.30.까지 킬로그램당 212원 ○ 2025.5.1.~2025.6.30. 킬로그램당 234원	<input type="checkbox"/>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 (왼쪽과 같음) ○ <u>2025.7.1.~2025.8.31.</u> 킬로그램당 234원
<input type="checkbox"/>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 2022.8.1.~2025.6.30. 킬로그램당 10.2원	<input type="checkbox"/>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 (왼쪽과 같음) ○ <u>2025.7.1.~2025.12.31.까지</u> 킬로그램당 10.2원
<input type="checkbox"/>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 2022.8.1.~2025.6.30. 순발열량에 따라 킬로그램당 41.6원, 39.1원, 36.5원	<input type="checkbox"/>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등 ○ (왼쪽과 같음) ○ <u>2025.7.1.~2025.12.31.까지 순발열량에 관계없이 킬로그램당 39.1원</u>

☞ p.148 상 15~16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2025.7.1.~2025.8.31.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 p.148 하 5~4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2022.8.1.~2025.12.31.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 p.149 상 2행. 아래 내용 추가

자. 유연탄	• <u>2025.7.1.~2025.12.31.까지 킬로그램당 39.1원</u>
--------	--

3.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내용>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3%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로 정하였다.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input type="checkbox"/> 1세대 2주택 이상 : 60%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 : 2024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input type="checkbox"/> (왼쪽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2025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4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43%·44%·45%) 과 동일하게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가표준액</th> <th>2024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43%</td> </tr> <tr> <td>3억원 초과 6억원 이하</td> <td>44%</td> </tr> <tr> <td>6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시가표준액	2024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시가표준액	2024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5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p.272 상 15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시가표준액 × 43% · 44% · 45% (2025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 p.272 상 16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2025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령 추가내용

🕒 p.393 上 6행. 아래 내용 추가

IV.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과세이연의 요건

(1) 적용대상 법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현재 출자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한 출자법인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여기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피출자법인 지원요건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①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 ②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 ③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 ㉠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 ㉡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3. 과세이연 방법

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이하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2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참고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text{양도차익상당액} = (\text{해당 자산 양도차익} - \text{이월결손금}^{\text{㉠}}) \times \frac{\text{피출자법인의 채무구조개선 금액}^{\text{㉡}}}{\text{출자법인의 자산 양도가액}}$$

- ①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 금액 : MIN (㉠, ㉡)
 - ㉠ 피출자법인 재무구조개선 지원금액 : 피출자법인 지원방식 ①·②·③에 따른 (출자금액 + 출자전환·채권 전환 금액)
 - ㉡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환액은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

4. 사후관리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세액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본다.

- 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원방식 ② 또는 ③·㉡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않거나 채권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③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원방식 ③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